

FTA ANALYSIS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안소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황선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안소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황선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주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¹⁾

인도네시아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며, 인구가 약 2억 6천만 이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제12위의 교역상대국이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 성장하는 중산층 시장 및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국가는 최근 신남방국가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최종 타결되었다.

본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품목 등을 확인하고, 신규 통상 · 통관환경 및 FTA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전에 우리나라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주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新남방 주요 수출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활용방안, 인도네시아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19)』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1. 인도네시아 무역현황

1)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은 약 USD 3,490억불이며,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501억불), 일본(372억불), 미국(362억불), 인도(278억불), 싱가포르(257억불), 한국(177억불) 등으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한다.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입액은 약 USD 3,455억불로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813억불), 싱가포르(383억불), 일본(332억불), 태국(202억불), 미국(183억불), 한국(172억불) 등으로 수입에서도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7년	2018년	합계				2017년	2018년	합계	
	전체	168,804	180,209	349,013	100%		전체	156,895	188,673	345,568	100%
1	중국	23,049	27,127	50,176	14%	1	중국	35,767	45,538	81,305	24%
2	일본	17,791	19,480	37,271	11%	2	싱가포르	16,888	21,439	38,327	11%
3	미국	17,810	18,471	36,281	10%	3	일본	15,241	17,976	33,217	10%
4	인도	14,083	13,726	27,809	8%	4	태국	9,279	10,952	20,231	6%
5	싱가포르	12,767	12,991	25,758	7%	5	미국	8,149	10,212	18,361	5%
6	한국	8,187	9,532	17,719	5%	6	한국	8,122	9,088	17,210	5%
7	말레이시아	8,467	9,436	17,903	5%	7	말레이시아	8,796	8,602	17,398	5%
8	필리핀	6,627	6,825	13,452	4%	8	호주	6,010	5,825	11,835	3%
9	태국	6,462	6,819	13,281	4%	9	인도	4,048	5,017	9,065	3%
10	대만	4,219	4,701	8,920	3%	10	사우디아라비아	3,167	4,911	8,078	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2018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천연가스·원유 등의 광물성 연료와 금속광물을 포함한 광산물·농림수산물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에서도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은 석탄(HS 270119, 270112), 팜유와 그 분획물(HS 151190), 천연가스(HS 271111, 271121),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등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수출						
순 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168,804	180,209	6.8%
1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10,482	14,074	34.3%
2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3,815	12,951	-6.3%
3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6,185	6,959	12.5%
4	석탄	270112	유연탄	7,380	6,536	-11.4%
5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5,238	5,120	-2.2%
6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440	4,187	21.7%
7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960	3,837	-22.6%
8	천연가스	271121	천연가스(가스 상태)	2,600	3,633	39.7%
9	식물성물질	15111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4,698	3,577	-23.9%
10	석탄	270210	갈탄(응결상태 제외)	2,594	3,329	28.3%
11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286	2,516	10.1%
12	금 · 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839	2,032	10.5%
13	패션잡화	711319	귀금속(은 제외)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2,556	1,929	-24.5%
14	기타정밀화학 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1,760	1,673	-4.9%
15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108	1,548	39.7%
16	자동차	870322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의 차량 (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1,150	1,534	33.4%

17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1,571	1,524	-3.0%
18	기타금속광물	711299	기타 금속형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906	1,383	52.6%
19	식물성물질	151329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의 분획물 (조유 제외)	1,832	1,369	-25.3%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1,332	1,361	2.2%

주 :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프라 발달이 미비하고 더욱이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연료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로 제품 형태의 광물성 연료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기, 완제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목(HS 6단위 기준)은 원유를 제외한 경질유와 조제품(HS 271012),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271019), 전화기 부분품(HS 851770), 밀과 메슬린(HS 100199), 가공하지 않은 금(HS 710812)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수입						
순 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156,895	188,673	20.3%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9,265	11,071	19.5%
2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7,064	9,161	29.7%
3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4,854	6,073	25.1%
4	유선통신기기	851770	전화기 부분품	3,512	4,169	18.7%
5	식물성물질	100199	밀과 메슬린(듀럼종 밀 제외)	2,637	2,571	-2.5%
6	금 · 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026	2,126	107.2%

7	식물성물질	230400	대두 착유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고체형태의 유박	1,642	2,045	24.6%
8	기호식품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18	1,755	-13.0%
9	LPG	271112	프로판	1,275	1,531	20.1%
10	LPG	271113	부탄	1,431	1,504	5.1%
11	기타농산물	520100	면[카드(card)나 코움(comb)하지 않은 것]	1,325	1,442	8.8%
12	영상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980	1,236	26.1%
13	곡실류	120190	대두(종자 제외)	1,151	1,103	-4.1%
14	컴퓨터	847130	휴대용 자료처리기계	957	1,052	9.9%
1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 기계	674	986	46.4%
16	칼륨비료	310420	염화칼륨	794	974	22.6%
17	자동차부품	870840	차량용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725	957	32.1%
18	자동차부품	870899	기타 차량용 부분품	867	925	6.6%
19	사무기기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	514	913	77.6%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449	철의 기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92	902	8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1)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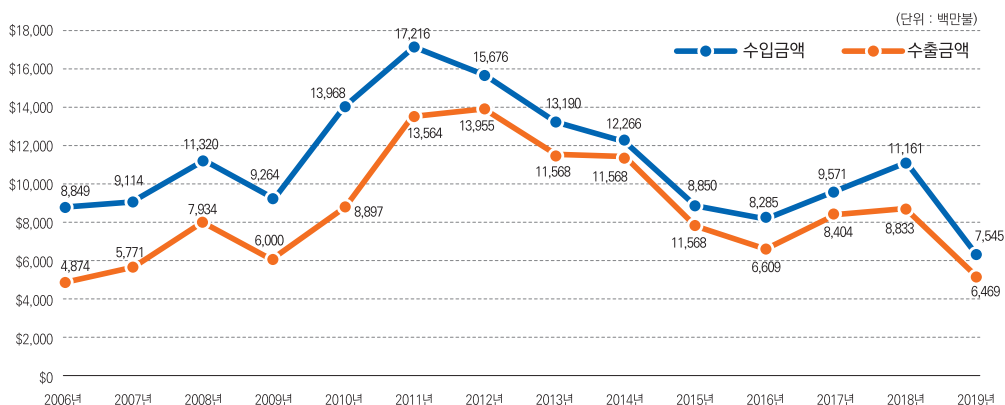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후 對인도네시아 교역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최고 교역액(약 307억)을 달성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10월	6,469	-	7,545	-	14,014	-
2018년	8,833	5.1%	11,161	16.6%	19,994	11%
2017년	8,404	27.2%	9,571	15.5%	17,975	21%
2016년	6,609	-16.1%	8,285	-6.4%	14,894	-11%
2015년	7,872	-30.7%	8,850	-27.8%	16,722	-29%
2014년	11,361	-1.8%	12,266	-7.0%	23,627	-5%
2013년	11,568	-17.1%	13,190	-15.9%	24,758	-16%
2012년	13,955	2.9%	15,676	-8.9%	29,631	-4%
2011년	13,564	52.5%	17,216	23.1%	30,780	35%
2010년	8,897	48.3%	13,986	51.0%	22,883	50%
2009년	6,000	-24.4%	9,264	-18.2%	15,264	-21%
2008년	7,934	37.5%	11,320	24.2%	19,254	29%
2007년	5,771	18.4%	9,114	3.0%	14,885	8%
2006년	4,874	-3.4%	8,849	8.1%	13,723	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화학공업제품과 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특히 반도체용 전자부품인 메모리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이 각각 97%, 131%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1위 품목인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의 경우에도 수출 증감률이 155%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수출						
순 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8,404	8,833	5%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4	776	155%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원유 제외)	638	529	-17%
3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610	군함	727	342	-53%
4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5	227	97%
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 기계	89	143	61%

6	편직물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4	131	-9%
7	합성고무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 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152	117	-23%
8	무선통신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118	117	-1%
9	합성수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89	110	24%
10	합성고무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135	106	-2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5	104	131%
12	기타석유 화학제품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96	103	7%
13	아연제품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아연 99.99%이상)	95	92	-3%
14	철강판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168	91	-46%
15	편직물	600622	면으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100	87	-13%
16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67	85	27%
17	정밀화학원료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57	77	35%
18	편직물	600632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89	73	-18%
19	합성수지	39076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4	66	22%
20	철강판	7209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두께 0.5~1mm)	101	66	-35%

주 : 20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유연탄 · 구리광 · 원유 등을 포함한 광산물과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기타 금속

광물과 합금철 · 선철 등 철강금속 반제품의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수입						
순 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9,571	11,161	17%
1	석탄	270112	유연탄	2,116	2,254	7%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1,253	1,498	20%
3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56	699	96%
4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448	563	26%
5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444	332	-25%
6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4	285	-17%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2071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탄소 0.25/ 100 미만, 횡단면 직사각형인 것)	145	262	81%
8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10	241	15%
9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75	241	38%
10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04	228	12%
11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63	222	36%
12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144	177	23%
1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65	174	168%
14	기타금속광물	711299	금·백금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150	4,900%
15	신변잡화	640399	기타 신발류	105	127	21%
16	철강판	7219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cm 이상, 두께 3~4.75mm)	0	115	-
17	기타정밀 화학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76	83	9%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380	그 밖의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49	78	59%
19	식물성물질	151319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81	73	-10%
20	의류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또는 소년용 방한용 외투	50	73	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1) 2018년 우리나라의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률

[단위 : 백만불, %]

수출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¹⁾	전체미화금액
한-아세안 FTA ²⁾	6,795	13,036	52.1%	38,345
- 말레이시아	1,022	1,769	57.8%	8,989
- 태국	2,124	4,008	53.0%	8,503
- 인도네시아	2,431	4,739	51.3%	8,834
- 필리핀	1,218	2,520	48.3%	12,019

1)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

2)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 제외한 수치이며, 표기되지 않은 개별국가는 2018년 수출실적 없음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은 약 51.3%로 한-아세안 전체 FTA 활용률(52.1%)을 다소 밑돌며 20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 4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2019.10.16) 실질 타결된 한-인니 CEPA는 양국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으로써, 한-인니 CEPA가 공식 발효될 경우 對인도네시아 FTA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니 CEPA 자유화수준】

자유화수준				
국가명	기준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한-인도네시아 CEPA
한국	수입액	93.6%	3.7%	97.3%
	품목수	90.2%	5.3%	95.5%
인도네시아	수입액	88.5%	8.5%	97.0%
	품목수	80.1%	12.9%	93.0%

2) 2018년 우리나라의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 對인도네시아	산업분류 ¹⁾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²⁾	전체미화금액
	광산물	34	37	91.9%	1,361
	화학공업제품	839	1,237	67.8%	1,853
	철강금속제품	581	881	65.9%	1,275
	생활용품	62	106	58.5%	173
	전자전기제품	159	316	50.3%	1,08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1	120	42.5%	202
	농림수산물	40	95	42.1%	184
	기계류	409	1,097	37.3%	1,612
	섬유류	255	848	30.1%	1,066
	잡제품	0.4	2	20.0%	20
	총합계	2,431	4,739	51.3%	8,834

1) 산업분류 MTI 1단위 기준

2) FTA 수출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

2018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한-아세안 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산업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MTI 1단위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주력 수출 산업

광산물	석유제품, 금은 및 백금, 기타 비금속광물 등
화학공업제품	합성고무,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철강금속제품	철강판, 아연제품, 주단조품 등
생활용품	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악기, 가구, 주방용품 등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기기, 전기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이 중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약 12억불)으로 동 제품은 특혜대상금액뿐만 아니라 특혜적용 금액도 함께 높아 對인도네시아 산업별 FTA 활용률에서 2위를 차지(67.8%)하고 있다.

한편, 기계류의 경우 특혜대상금액이 약 10억불로 화학공업제품 다음으로 높은데 비해 특혜적용금액(약 4억불)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상당히 낮은 FTA 수출활용률(37.3%)을 보이고 있다.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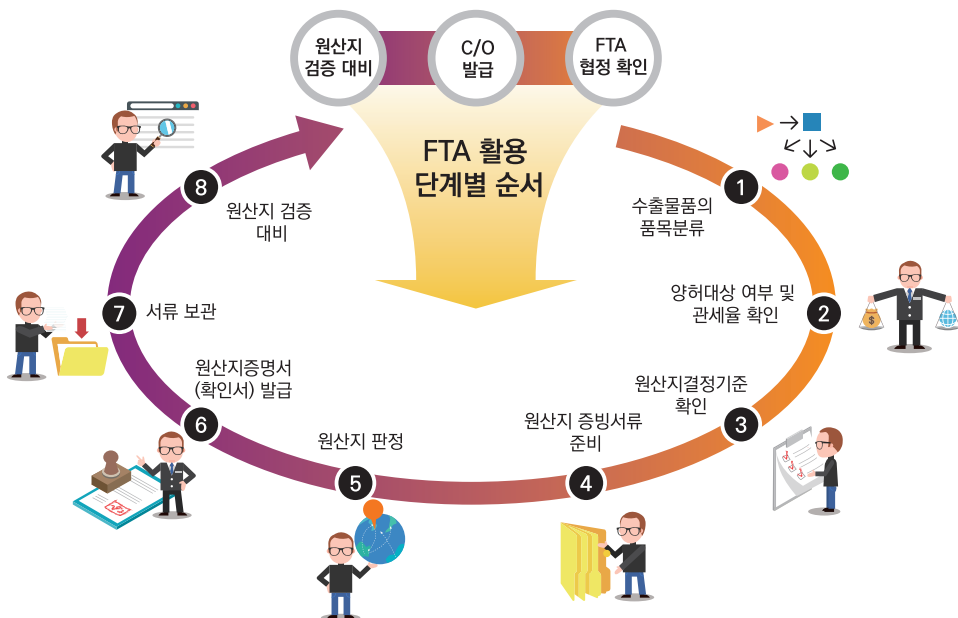
- ❧ 화학공업제품 (약 12억불)
- ❧ 기계류 (약 10억불)
- ❧ 철강금속제품 (약 8.8억불)
- ❧ 섬유류 (약 8.4억불)
- ❧ 전자전기제품 (약 3억불)

FTA 활용률이 인도네시아 평균(51.3%) 이하인 산업은?

- ❧ 전자전기제품 (50.3%)
-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2.5%)
- ❧ 농림수산물 (42.1%)
- ❧ 섬유류 (30.1%)
- ❧ 기계류 (37.3%)
- ❧ 잡제품 (20.0%)

4.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 및 유의사항

1)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 단계별 순서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인도네시아)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감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 시 유의사항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PSR)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과도기간²⁾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2019. 9월 기준,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 (수입국이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인 경우) 수출 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단,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수입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인 경우)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3) 인도네시아의 특혜 원산지 제도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원산지결정기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아세안-중국, 아세안-

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된다.

*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허용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이행

2019. 11월 기준

구분	일반기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RC(BD/BU) 40% or CTH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RC(BU) 40% or MC 60%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RC(BU) 35% + CTH or MC 65% + CTSH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MC 60%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RC(BD) 40% or CTH

주) RC :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Contents), BD: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MC: 비원산지재료비율(Improvised Contents),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자료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직접운송요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요건 또한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더라도 비당사국 경유 · 환적요건*이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지리 · 운송상 정당한 경우에 한함(경유국 거래 및 소비는 불인정)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도부터 환적화물에 대해 FTA적용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적용중이다. 즉, 환적

시 환적국가의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받아야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비가공증명서 샘플】

確認書號碼:
 Certificate No.:


 香港海關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中轉確認書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致 申請者:
 To Applicant:

為符合內地與不同國家及地區所簽訂的自由貿易協定下的「直接運輸」之要求，下列貨物在香港停留期間將接受香港海關之監督。詳情如下：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the Mainland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consignment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Hong Kong Customs in Hong Kong. Details are as follows:

第一部分 貨物詳情 Part I Consignment Particulars

來源地: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 From Air/Land/Sea* ()	至 空運/陸運/海運* () To Air/Land/Sea* ()		
抵港船隻/車輛/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 *	提單 / 空運提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 Bill of Lading/Airway Bill (1 st conveyance) *		實際抵港 日期/時間: ATA:	
離港船隻/車輛/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 *	提單 / 空運提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 Bill of Lading/Airway Bill (2 nd conveyance) *		預計離港 日期/時間: ETD: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件數/重量: Pieces/Weight:				

香港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載具號碼/ 運輸車輛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	封條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抵港 Incoming				
離港 Outgoing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 有 ☐ 裝貨/卸貨 ☐ 重新包裝 ☐ 儲存 ☐ 其他 ☐ 保持貨物原本狀態 ☐ 否
☐ Yes ☐ Vanning/Devaning ☐ Repacking ☐ Storage ☐ Others ☐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 No

文件查閱:
 Document check:

☐ 提單 ☐ 離單 ☐ 原產地證明書 (號碼:) ☐ 其他 ()
☐ Bill of Lading ☐ Manifest ☐ Country of Origin (No.:) ☐ Others ()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負責人姓名: Name:		日期: Date:	

香港海關印處
 Chop of Hong Kong Customs:



海關關長
 ()
 ()
 for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海關查詢電話
 Enquiry tel. no.: (852) 3152 0231

簽發日期:
 Date of issue:

*請將卡邊印字翻正. Please use appropriate

자료: PENASCOP LOGISTIK

-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원산지결정 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각 협정별 규정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협정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AK 서식으로 작성됨

2019. 11월 기준

구분	양식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Form D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Form E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Form AK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A)	Form IJEPA/JIEPA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Form AI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Form AANZ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Form IP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Form AJ

자료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유의사항
 - FORM AK C/O가 출항일 이후 3일이 지나서 발급될 경우,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며 원산지증명서상 소급

적용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가 명기되어야 효력이 있음
 - 출력 시 원본(ORIGINAL)의 경우에는 반드시 칼라 출력이 되어야 하며 OVERLEAF 뒷면 출력 시 위아래 확인이 필요(옆으로 넘겼을 경우 바로 나오도록)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샘플_FORM AK(앞면)】

COPY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001-19-0720181 Reference Code. a325-9d3a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SEP. 19, 2019 Vessel's name/Aircraft etc. HYUNDAI FORWARD 094S Port of Loading INCHEON, KOREA Port of Discharge JAKARTA, INDONESI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N/M ////////	////////	CTH	10, 130 KG			
End Of Page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REPUBLIC INDONESIA (Importing Country) SEoul KOREA 26 SEP 2019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i>W. S. Yun</i> Authorized Signature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SEoul 26 SEP 2019 ISSUED RETROACTIVELY  <i>MIN-JI, KIM</i> Assistant Manage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자료 : PENASCOP LOGISTIK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샘플_FORM AK(뒷면)】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KAFTA):
- | | | |
|-------------------|-------------|-----------|
| BRUNEI DARUSSALAM | CAMBODIA | INDONESIA |
| REPUBLIC OF KOREA | LAOS | MALAYSIA |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 THAILAND | VIETNAM | |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A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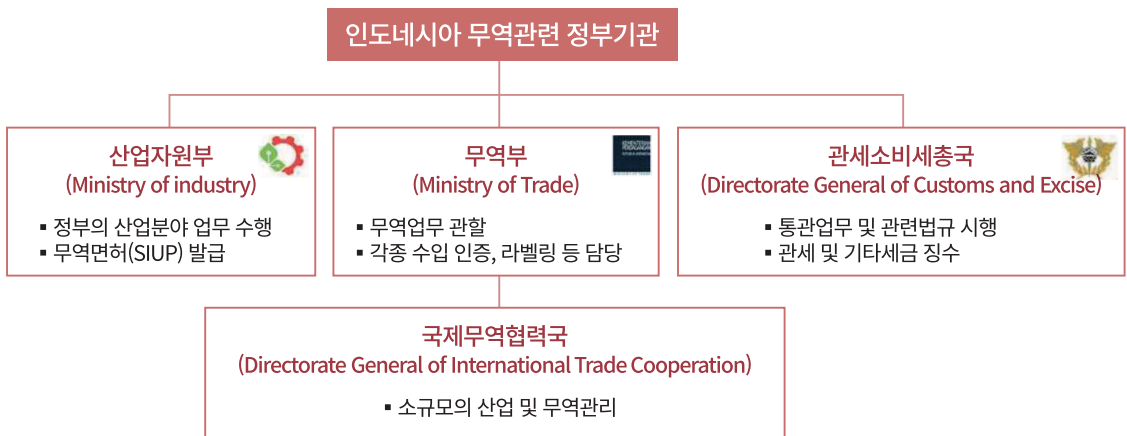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CTC" "WO-AK"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FREE-ON-BOARD (FOB) VALUE: The FOB value in Box 9 shall be reflected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CO (Form AK) issued to and from Cambodia and Myanmar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used, for the next two (2) year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arrangement.
7.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8.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9.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10.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1.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2.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자료 : PENASCOP LOGISTIK

5. 인도네시아 통상 · 통관 환경

1)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정부기관



인도네시아의 무역관련 정부기관은 크게 산업자원부, 무역부(국제무역협력국), 재무부(관세소비세총국)로 나뉘어져 있다.

산업자원부는 주로 정부의 산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면허(SIUP) 발급을 담당하며,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각종 수입 인증 및 라벨링과 원산지 관련 규정 등의 발표를 담당한다.

국제무역협력국은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소규모 산업과 무역을 관리하며, 관세소비세총국은 전반적인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의 시행 및 관세 등 수입물품에 대한 기타 세금을 징수한다.



(3) 수입자등록번호(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에서 API를 소지한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API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발급한다. 단, 일시적으로 판촉이나 연구개발, 자가이용 등의 목적으로 빈도가 적은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API 취득 필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설립취지서) 사본,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투자등록서, 투자 Approval in Principle(기본승인서), BKPM 발급 사업면허, 납세자번호(NPWP)³⁾, 사업자 등록증(TDP), 외국인취업허가증(IMTA), 이사회 전원의 사진(붉은색 배경, 3×4 사이즈) 등이 필요하다.

수입자 등록번호의 유형은 API는 API-U와 API-P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동일한 업체는 두 가지 유형의 API를 중복하여 소지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 분		요 건
API (수입자 등록 번호)	API-U (무역/유통업체용 수입허가서)	▪ 무역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 주로 무역 · 유통 · 건설 업종에 발급 ▪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
	API-P (제조업체용 수입허가서)	▪ 원재료 · 부재료 또는 가공공정을 위한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 생산설비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사업자고유번호(NIB : Nomor Induk Berusaha)

인도네시아 온라인 통합 인허가(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시작(2018. 7. 9) 및 노동부 장관 규정의 발효(2018. 7. 11)에

따라 법인 인허가 및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허가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⁴⁾ 사업자고유번호는 기존사업자등록증(TDP), 수입자등록

3) NPWP(Nomor Pokok WaJib Pajak)는 납세자번호 또는 세무등록번호로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음

4) <https://orom.co.id/>

번호(API), 관세청등록번호(NIK) 등 각 부처와 기관에서 발급받던 인허가들을 OSS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으로 통합

간소화한 인허가 제도이다. 신규 및 기존 법인은 모두 사업자고유번호(NIB)를 보유하여야 한다.

【사업자고유번호(NIB) 취득 절차】



① OSS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② 법인정보입력
(투자제한업종 입력시,
변경통보)

③ 사업자고유번호(NIB)
취득 후 다른 서류 인허가
진행 가능

자료 :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OSS 시행에 따른 인허가 취득절차 개정 전 · 후를 비교하자면, 업종에 따른 필수 인허가 종류와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자법인(PMA) 무역업을 기준으로 인허가 취득절차의 개정 전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OSS 시행에 따른 인허가 취득절차 개정 전 · 후를 비교】

개정 전		OSS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제도 일부 통합	개정 후	
1	정관(Akte pendirian)		1	정관(Akte pendirian)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5	무역면허(SIUP)		5	사업자고유번호(NIB)
6	사업자등록증(TDP)		6	부과세신고번호(PKP)
7	부과세신고번호(PKP)		7	사업허가서(Izin Usaha)
8	수입자등록번호(APIU)		8	사업운영허가서 (Iain Komersial/ Operation)
9	관세청등록번호(NIK)			

자료 :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2) 신규 통관제도 개정사항 1 : HS코드 개정(10자리 → 8자리)

기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공용 8자리 품목분류체계인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가 아닌, 별도의 인도네시아 10자리 HS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통합 표준에 맞추기 위해 세법분류체계를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현재(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관세율표상 HS코드(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총 10,826개(2단위 98개, 4단위 1,222개)에 달한다.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HS 분류기준은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 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나 우리나라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HS에서 확인 가능함
 - INSW 사이트 주소 : <http://eservice.insw.go.id/>
 -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신규 통관제도 개정사항 2 : 관세 미납에 따른 벌금 규정 개정

최근 인도네시아의 통관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세 부족액에 따른 벌금 규정이 2019년 5월 변경되었다.⁵⁾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통관이 완료된 신고서는 지역세관에서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신고가격 및 품목 분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절차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입관세나 수출관세 부족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족한 세액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추징 과정에 있어 규정이 불분명하고 수출입 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아 미납 비율의 산출 방법과 미납률에 따른 벌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5) 통관 분야의 벌금 적용에 관한 법령 '2008년 28호' → 개정령 '2019년 39호'(2019. 5. 15 공포, 2019. 7. 15 시행)이 시행

GR-28 (개정 전)		GR-39 (개정 후)	
미납률	벌금	미납률	벌금
25% 이하	100%	50% 이하	100%
> 25% ~ 50%	200%		
> 50% ~ 75%	400%	> 50% ~ 100%	125%
> 75% ~ 100%	700%		
> 100%	1,000%	> 100% ~ 150%	150%
		> 150% ~ 200%	175%
		> 200% ~ 250%	200%
		> 250% ~ 300%	225%
		> 300% ~ 350%	250%
		> 350% ~ 400%	300%
		> 400% ~ 450%	600%
		> 450% ~ 500%	1,000%

주: 만약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신고건당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

- (개정전) 지불 관세액의 부족 비율에 따라 100~1,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개정후) 산출 기준이 되는 미납율을 가산된 벌금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변경

4)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LARTAS)

인도네시아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화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금지·제한 규정을 LARTAS(Larangan dan Pembatasan) 규정이라 한다. 수입 금지 및 제한물품은 식품의약품감독청 (BPOM), 보건부, 상업부 등 해당정부기관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9년 현재 LARTAS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관련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은 총 5,229개 품목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규정 및 LARTAS(수출입 금지 및 규제) 규정 관련 정보>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국가 싱글윈도우 : <http://eservice.insw.go.id>

특히, 다음과 같은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담당정부기관	수입화물의 종류	필요서류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BPOM)	▣ 의약품 및 원재료 ▣ 식품 및 보조식품 ▣ 화장품 및 원재료 ▣ 전통의약품 및 원재료	▣ 수입증명서 ▣ 비식품의약품증명서				
보건부	▣ 의료기기 ▣ 마약 ▣ 항정신성물질	▣ 의료기기의 등록수 ▣ 검사관의 보고서 ▣ 마약수입승인증서 ▣ 항정신성물질수입인증서 ▣ 의약기구 및 가정용건강용품의 등록수				
상업부	구분	SNI	LS	IP	IT	SPI
	타이어	O				
	철강			O	O	
	강판 및 합금 롤	O				
	식품 및 음료제품		O			
	직물 및 직물제품		O	O	O	O
	의류		O			
	전자기기		O			

<용어 설명>

SNI :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증

LS : 조사보고서로서 산업과 무역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화물을 비롯한 수입화물의 통관 보완 서류임.
조사보고는 화물을 하역하는 국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IP : 제조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업신청은 상업부에 신청(제조수입업자는 LARTAS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IT : 등록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역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수입업자 신청은 상업부에 함(등록 수입업자는 LARTAS 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SPI : 수입승인서

5)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심화

조코위 정부는 2018년 루피아 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등 지속적인 내수 경제의 불안정세가 이어지자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정책을 심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⁶⁾

- 수입산 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상향 조정 발표(2018. 9. 6)

-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적용 강화 규정 발표(2018. 7. 13)

- 전자상거래 제품의 소량수입액(De minimus) 기준 하향 조정(2018. 9. 10)

- 수입대체재로서의 바이오디젤(B20) 사용 독려(2018. 9. 1)

- 철강 및 타이어 관련 법률 개정(2019. 1. 20 / 2019. 2. 1)

6) 비관세장벽 1 : 한국과 관련된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규제국	HS	품명	규제 내용	조사개시일
인도네시아	8415.90	증발기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6-12
	7607.11 / 7607.19	알루미늄 호일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10-09
	6907.21 / 6907.22 / 6907.23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 벽용 타일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9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규제중)	2016-08-22
	3102.30	질산암모늄	반덤핑(규제중)	2015-06-01
	7228.70	I-H형 합금강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2-12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	세이프가드(규제중)	2012-12-19
	7210.12	석도강판	반덤핑(규제중)	2012-06-25
	7209.16 / 7209.17 / 7209.18 / 7209.19 / 7209.26 / 7209.27 / 7209.28 / 7209.90 / 7211.23 / 7211.29	냉연코일	반덤핑(규제중)	2011-06-24

자료 : 무역협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7) 비관세장벽 2 : 수입허가 및 인증 (SNI, BPOM,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식약청 인증(BPOM)	할랄(HALAL)인증
		
- 인도네시아 국가규격으로, 제품 규격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 기술 · 디자인 그리고 시험 방법 등의 표준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준임 - 기술위원회인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에 의해 발행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은 원칙상으로는 임의 규정이지만 국민의 안전성과 위생,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있음 (확대경향) - 취득에 약 6개월 소요(2년 주기 갱신) <강제인증품목 검색 사이트>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SNI_Wajib<SNI 정보 확인 사이트> http://sisni.bsn.go.id/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인증에 해당함 - 인니 식약청 담당 -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수입자는 BPOM에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을 등록하여 BPOM 장관의 「가공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가공식품 유통허가증과 함께 유통번호가 주어지는데, 이를 가공식품유통허가번호(ML번호)라고 함. 이는 상품라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화장품에 대한 인증으로,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서(ASEAN Cosmetic Directive: ACD)를 국내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취득에 약 4개월 소요(3년 주기 갱신)	- 식품, 화장품, 의약품(원료) 및 해당 제품의 제조설비에 적용 - 종교부 산하 인니 할랄청(BPJPH) 담당 - 할랄인증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요건은 제품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서 할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혼입되지 않았다는 증명임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의무화 되었지만 세부 시행 내용은 부재한 상태로 인니 정부는 제품별로 계도기간을 설정함 - 취득에 약 6개월 소요(2년 주기 갱신)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FTA를 통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관세절감에 주요한 요인이 있다.

관세가 낮아져서 타국가와 거래하던 상대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입거래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부진하여 무역이 침체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체결되는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대·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국가와의 FTA 체결 등 연일 FTA 체결이라는 내용이 뉴스에서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FTA부터 현재까지 FTA에 대한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현황과 FTA 체결과정 및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FTA의 체결과정 정리

FTA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단계인 준비 및 여건조성→협상개시 선언→협상 진행→협상 타결 및 가서명→협상 정식서명→협상 국회 비준→협상 정식 발효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FTA의 시작부터 발효까지 기간은 협정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는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5년 12월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반해 얼마전 FTA 재개정이 발생한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4월 공식 협상 발효 후 2012년 3월 FTA가 시행되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 연구가 개시되어 2014년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측 국회 비준이 승인되고, 2016년 7월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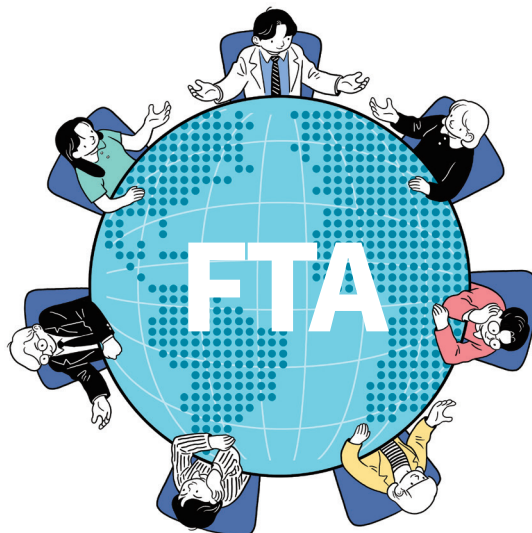
참고로 FTA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에서 등장하는 용어는 체결, 타결, 비준, 발효인데 체결이란 자유무역협정을 서로 맺자고 서명한 것이며, 타결이란 협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시행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국회 비준이란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을 국회의원수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며, 발효란 조약이 본격시행하는 일자, 즉,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표 1] FTA 체결과정 정리

구분	내용
준비 및 여건 조성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설치
협상개시 선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협정문을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이 협정문 최종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실질적인 협상 타결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하여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협상 국회 비준	국회 비준 요청 후, 국회 동의 얻으면 국내 절차 완료, 상대국 통보
협상 정식 발효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정식 발효

자료 : FTA 포털



3. FTA의 체결 의의 및 현황

우리나라의 FTA 체결역사를 거슬러 보면 2004년 한-칠레 FTA부터 시작되어 최근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FTA에 관한 협상과 체결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로 여겨진 한-칠레 FTA발효 후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으로 인해 2006년에는 싱가포르와 EFTA가 이후 2007년에는 거대 경제권과 협정을 맺은 최초의 FTA인 아세안과도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거대경제권인 EU와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었던 미국과의 FTA역시 2012년 시작되었다.

[표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및 의의

2019년 11월 기준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발효 (16건)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 ¹⁾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²⁾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³⁾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3.05.01	유럽 · 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9.23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5	2015.06.01	2015.12.20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20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나라 제5위 투자대상국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 5개국 ⁴⁾	2015.06	2018.02.21	2019.10.01. 부분발효 *(10.1)니카라과, 온두라스 (11.1)코스타리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자료 : FTA korea

특히, 한-미 FTA는 개정되어 2019년 1월 개정의정서가 공포 되었다.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무역구제, 섬유, 화물자동차, 자동차 등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다.

발효된 16개 협정외에 우리나라는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타결된 상태이다.

4. 마치며

FTA를 통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관세절감에 주요한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FTA를 통해 관세가 이전에 10%이었던 제품이 0%로 낮아지면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며, 동일한 이유로 관세가 낮아져서 타국가와 거래하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입거래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최근 세계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문이 타결된 상태이고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RCEP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미-중 무역 갈등 및 자유무역이 한동안 침체되었던 시기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우리나라는 앞으로 체결되는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대·중소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